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2061 |
|----------|------|

2017. 9.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7. 8. 18 남 창 진 의원 발의 (2017. 8. 21 회부)

##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7.7.)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한 바 있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입간판의 표시 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 디지털광고물을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정비함(안 제7조제5호).

-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중에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제23조제2항2호나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7.7)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남창진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먼저,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안 제4조제1항제3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sup>1)</sup>에 따라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나(‘17.7.13 일부개정),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가로형 간판의 크기만 표시하고 세로형 간판의 크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려

1) 상위법령 개정(‘16.7.7)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합하여 벽면이용 간판으로 표시방법을 정하였음.

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br>-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에 설치하는 간판의 크기                                    |   |
|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에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에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 두 번째, ‘공연간판2)의 표시방법’(안 제7조)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연간판이 디지털 광고물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공연간판에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개정 취지와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7조 제5호)   |       |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

2)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4호)

- 세 번째, ‘**입간판의 표시방법**’(안 제9조의2)과 관련해서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이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표시방법에서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입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의2 제1항 제3호)  |         |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u>                             | <후단 삭제> |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2조 제4항 제1호)<br>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으로 적용하고, <u>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u> |         |

- 네 번째, ‘**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안 제23조제2항제2호나목) 조정은 자치구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어느 한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당초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은 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5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중에서도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은 신고 배제 대상인 바,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등(예 : 6m× 5cm =3m<sup>2</sup>)이 심의대상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            |   |
|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

- 그 외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항제1호나목)로서,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바로 잡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됨.